

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

#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3호

주최 :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주관: 학생인권·학교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교과부 시행령 개악 저지 대책모임



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순서 & 글 심은 순서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 \* 앞풀이 마당 : 지금 학교에선!(14:00~ 14:20)

- 지금 우리학교 현실은... : 최 훈 민(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1
- 누구의 학교,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 심 홍 보(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생) 4
- 학생인권의 현 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 박 영(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학생) 6

## \* 기초발제(14:20~ 15:0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 · 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상 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
- 교과부안 교사와 교육을 위한 것인가? - 학교 현실에서 바라본 교과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최 형 규(수원 유신고 교사) 43

## \* 지점토론(15:00 ~ 15:20)

- 여교사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안적 방향  
김 수 현(광명 충현고 교사) 51
-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중요성 -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변 춘 희(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55

## \* 휴식(15:20~15:30)

## \* 종합토론(15:30~16:30)

## \* 참고자료

- 1월 25일(화) 긴급 청소년성토포대회 기록 7
- 초중등교육법개정 안 59



## 지금 학교에선!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 발언 1  
지금 우리학교 현실은...  
최 훈 민(삼각산중학교 학생회장)

이번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학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가 제한되며 △학생징계수단으로 ‘출석정지’ 조치가 신설되고 △간접체벌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학교문화를 선진화하려고 발표한 방안인지 교장독재를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발표한 방안인지 정말 의문이겁니다.

학교에는 지금도 충분히 현실과 맞지 않고, 인권을 억압하는 규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교장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백지화

먼저 저희 학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외투규정, 학교 체벌실태를 비판한 학생회 신문을 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안 좋은 점은 문자화할 수 없다면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학내언론을 탄압하였고, 사전 검열했습니다.

교과부가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고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학생회 담당선생님과 모든 조율을 마치고 인쇄만 남은 학생회신문을 교장선생님의 “안돼!”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백지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고, 포털 메인에 올라가도 학교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학교에 면담을 요청해도 학교는 “니 식대로 하라.”라며 학생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만약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권을 억압하는 학칙들이 넘쳐나고 그야말로 끔찍한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뭐 배울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재가 얼마나 무섭고 안 좋은 것인지 몸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아니라 교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체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멀쩡한 아이가 선생님께 욕하고 대들지 않아

체벌금지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학교가 난장판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학교와 다른 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체벌금지 이전과 달라진 점은 별로 없습니다.

교육청의 체벌금지 이후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는 학생은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교사, 학부모였습니다. 또한, 발언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제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벌 대신 '타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지적당하면 그저 교실 뒤로 가고, 다음은 상담실로 가고 그다음은 교장실로 가는 겁니다. 교장실에 가게 되면, 무조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선생님마다 명확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석정지' 조치가 추가된다면, 억울하게 징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징계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체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멀쩡한 아이가 선생님께 욕하고 대들지 않습니다. 체벌한다고 해서 욕하고 대들던 아이가 갑자기 깎뚝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체벌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반항심만 심어줄 뿐 진정한 반성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간접체벌이 허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흡연도 몸에 해롭듯이 간접체벌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학생을 징계하고, 체벌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진정으로 대화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과부는 이런 시행령보다, 학교별 상담선생님 인원을 증가하고, 학생 상담을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교과부는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현실이 어떤지, 이번에 발표한 '학교 문화선진화방안'이 진정으로 학교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잘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권이 무너진다고는 말하지만 학교에서는 교권이 침해당하는 사례보다, 학생인권이 탄압받고 억압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과부는 말로만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내놓지 말고,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교육문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수준은 세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아마 최하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학교문화를 선진화 하고 싶다면,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그런데 교과부는 19세기 교과부도 아닌, 18세기 교과부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21세기 교과부로 돌아오셔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금 학교에선!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 발언 2  
누구의 학교,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  
심 흥 보(부천 소사고등학교 학생)

11월 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적용된 이후, 학교 내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하는 수업분위기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교칙을 변경하는 회의인 ‘학교생활규정심의회’에서 학생참관이 거부당했습니다. 학교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누구의 학교인지 누구를 위한 학교인지 더 나아가 누구의 인권인지 누구를 위한 인권인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학생은 학생이라 불리기 이전에 사람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임을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 곧 인권이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좋은 선생님이 되듯이 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 받아야 남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고등교육 6년 동안 인권을 존중 받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대한민국 학교 교육과정에 종속되어 있던 우리가 과연 사회에 나가 타인의 권리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배워온 우리는 사회에 나아가서도 내 옆의 동료들을 경쟁상대로만 바라 볼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권은 자유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힘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원시시대에 농업 혁명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유라는 힘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원시 사회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대였습니다. 산업 혁명이 이루어질 때 영국은 명예혁명을 바탕으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이고,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힘은 스스로에게 주체성을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이사회를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사회를 이끌 때에는 부모님도 선생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어, 주체적으로 나를 사회를 이끌어 보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이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겠습니까? 민주주의를 배우는 터전인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한 우리가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일제시대 동안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는 해방 이후 독재가 넘쳐흐르는 비극의 근 현대사가 이를 보란 듯이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열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쟁을 통한 배움, 경쟁을 통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최고의 발전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경쟁을 통해 배우게 하고 경쟁을 통해 사회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쟁은 사회를 퇴보시킬 뿐 어떠한 선의의 발전도 이룩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진정한 진보는 열정을 통한 발전, 진보입니다. 대한민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마음속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여러 영웅 들이 보여주었던, 부당하게 빼앗긴 권리에 대하여 싸우는 그 열정!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화산처럼 폭발하는 열정은 경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회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불러 일으켜 이사회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명목상의 목표 명목상의 성공이 있는 나라가 아닌 열정의 목표 열정의 성공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존재하는 사회. 자유의 힘이 나타나는 사회. 열정이 우리를 이끄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인권이 존중 받아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학생인권 · 학교민주주의 현주소와 해법에 관한 긴급 토론회  
“교과부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

---

## 지금 학교에선!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관한 학생 발언 3

박 영(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학생)

## 2011. 1. 25(화)에 진행된 “긴급 청소년성토포대회” 기록입니다.

어쓰 : 정말 긴급하게 저번 주말에 잡혔다. 사회도 급하게 맡아서,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 잘 봐주면 좋겠다. 간단하게 소개 정도 하고 시작하자. 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성토포대회를 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쓰라고 한다.

김\*\* : 수원에서 중학생 생활하는 김성호라고 한다.

공현 : 기록하려고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공현이다.

한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날이다. 청소년은 아닌데 가끔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에서 청소년으로 보도가 되곤 한다. 반갑다.

이\*\* : 전북 무주에서 왔다. 중학교 3학년 이\*\*이라고 한다.

유\*\* : 서울 고등학교 재학 중. 고3 되는 유\*\*이다.

전\*\* : 일산 고등학교 2학년 전\*\*이다.

영\*\* :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 영\*\*라고 한다.

김\*\* :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김\*\*이다.

박\*\* : 부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이라고 한다.

이\*\* : 한성여고 다니는 이\*\*이라고 한다.

고\*\*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인턴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고\*\*이라고 한다.

다영 : 이제 올해 19살이 되는 아주 멀리 멀리 동두천에서 온 다영이라고 한다.

뚝코 :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이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뚝코라고 한다.

어쓰 : 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린다. 몇 분이 아직 도착 못하셨지만 시작하겠다. 뭐 때문에 오신 건지는 다들 아실 거다.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에 학생인권조례 통과. 서울도 작년부터 학생인권조례 만들려는 운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버리면 조례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개악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다 교과부에서 작년부터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얼마 전에 실제로 발표했다. 청소년들 모여서 의견을 말하면서 교과부 왜 그러냐고 얘기해보는 자리이다. 초중등교육법 바뀌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면, 도구나 손등을 직접적 때리는 체벌은 안 되지만 대신 교육적 훈육을 위해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 때리는 건 아니지만 엎드려 뺨쳐 오리걸음 이런 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대신에 학칙을 만드는데 학생들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안 될 거 다들 안다. 마지막으로 출석정지 제도라고 해서 정학과 비슷한 새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교육이수 등 받아도 다른 곳에서 교육이수 같은 걸 받고 오면 그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이 됐는데 출석정지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학교에 못 나온 기간 전부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징계 같은 게 찍힌 애들 맘에 안 드는 애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출석정지 제도로 전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그게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보다는 앉아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다. 발언하실 때 여기 이 자리에 기꺼이 와주신 기자 분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랑 학교 정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름 싫다고 하면 발언하실 때 사진, 이름 안 나가면 좋겠다고 하고 시작하시면 된다.

김\*\* : 학생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간접체벌이 직접체벌과 뭐가 다른 건지 이주호 장관은 설명해야 한다.

똥코 : 그동안 계속 맞아왔다. 체벌금지 시행되고 학생들 때리는 거는 반인권적이다, 안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을 훈육하고, 행동을 제한하고, 억지로 시키고 하는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간접 체벌로 하기 싫은 것 괴로운 것을 강제로 시킨다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건 그런 부분부터 얘기해야 한다.

어쓰 : 새로 온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 : 노원에서 중학교 다니는 문\*\*이라고 한다.

심\*\* : 부천 소사고등학교 심\*\*다.

이창준 : 부천 소사고등학교 이\*\*이라고 한다.

김\*\* : 지금 간접체벌 관련 말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몇 백대 맞은 적 없어서 그래서 왜 간접체벌 그런 걸로 뽕뽕이 돌리나 싶다. 뭐 체벌은 다 금지되어야 하지만, 오리걸음 시키고 토끼뿔을 하는지 정말 힘들다.

이\*\* : 간접체벌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정말 백번도 더 말했는데, 아니 백번은 좀 오버인데 정말 많이 말해 왔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그 이후로 언론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 인권조례안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선생님 뭘 찍는다 인권을 오남용해서 교권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교권침해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인권다운 인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통해 얻은 거다. 지금 이거는 어른들이 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거 같다. 저희는 이걸 처음 받아보는데 갑작스레 주어져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인권다운 인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존중받고 실행해야 하는지. 과도기적 성격이고 예방주사라고 생각한다. 예방주사 맞고 열이 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가라앉히느냐, 그게 예방접종 맞고난 후 중요한 거다. 그게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기보다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까지 조화롭게 세 부분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가장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어쓰 :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중언부언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해가면서 주제별로 말하자. 좀 더 이야기해보자.

한날 : 저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 분들이 많은 거 같다. 왜 왔는지 궁금하다. 편하게 자기가 왜 왔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심\*\* : 저는 부천 소사고등학교 다니는 심\*\*라는 학생이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개정하는데 공청회 후에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참관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시위를 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 학교 현황을 많이 알리려고 왔다. 학생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생 표현의 자유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최\*\* : 저는 문자 받고 왔는데... 그 아까 전에 개정 심의 위원회 거부당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오라고 하긴 했다. 저희는 학생 2명 갔는데 다 학부모랑 선생님이고 학생은 저랑 부회장 2명이었는데 솔직히 가서 아무리 말해봐야 들었다. 조용히 해라. 밥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좀 생때 부리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야기한 것도 거기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운영위 가보니까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었다. 아마도 밥이 급했나 보다. 그래서 별로 개정 위원회에 실효성은 없는 거 같다.

또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개정이 저희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랑 체벌 실태 비판하는 학생회 신문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신문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담당 선생님 이랑 다 협의해서 발행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신문을 교장 선생님이 안돼, 라는 한 마디로 모든 걸 백지화시켜버렸다. 저는 나름대로 언론도 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더라. 지나가다 만난 부장 선생님은 계속 이판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판 식이 뭇데요? 하나까 서명운동이 잘못됐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어떤 절차상 문제냐. 하나까 학년반 번호 이름 하고 사인하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 집주소랑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알았다고 갔었다.

그렇게 해서 가다보니까 언론과 인터뷰 한 다음에 다음 메인인가 올라와서 나름 많이 알려졌다. 이 정도면 학교에서 연락 오지 않겠나 적어도 선생님이 연락해서 좋게 해결해보자 말씀하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

데 그건 그냥 기대였더라. 그런 대화를 먼저 요청하실 분들이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막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면담하고 싶다 했는데, 칩거 중이시더라. 그 뒤로 본 적이 없다. 병가 내시고 출장 가시고 병가 내시고... 본 적이 없다. 교감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답장이 왔다. 니 식대로 해봐라... 면담 요청했는데 니 식대로 하라면서 문자를 답이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마스크에 알려줘도 학교는 변하는 게 없다.

이런 일이 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 이뤄진 거라서 학생들이 많이 알질 못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방과 후 듣는 아이들이 완전 사실이 왜곡돼서 저를 욕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었다. 실추할 이미지는 있는지... 의문이고. 체벌한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했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칩거하시고 학생들을 생까시고 니 식대로 하라고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게 의문이고. 학교는 마스크 타든 안 타든 바뀌는 게 없다... 그냥 저런 애가 졸업하길 기다리는 그런 거? 그래서 졸업식 때 제가 답사 할 때 한 마디 할까 생각중인데 답사 시켜줄지... 고민이긴 한데.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이\*\* : 저희는 직접 교장 선생님 면담을 했다. 사건이 많이 터져서. 좋은 찬스인 줄 알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40분 듣기만 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저희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더라. 교장선생님과 대화가 아니고 학교가 막으려고 시도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게 없어서 당당하게 가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악법도 법이다, 니네가 시위 하는 건 교칙에 제한돼있다. 교칙에 어긋나니까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다. 교칙상 보면 퇴학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셨다. 그때는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이라 말을 못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실정법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자연법이란 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얻는 권리 아닌가. 표현의 자유도 자연법. 근데 표현의 자유 안에 또 시위가 있고. 저는 엄연한 자연법이라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과연 자연법에도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등등 경우에만 자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세가지를 어긴 적이 없다.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우리가 하는 건 정당하다. 그런데 불려가서 일방적으로 50분 동안 듣기만 했다. 교장 선생님이 열린 분이 아니라면 면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희는 그래서 한 두세 번 하고서도 성과가 없었어요.

체벌 관련 얘기한다고 하다가 다른 얘기로 쏘는데. 학교가 총 12년 교육 과정 거친다. 저는 12년이 절대 짧은 게 아니라 정말 길다고 생각하는데. 체벌 같은 단시간으로 교육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 정말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계속 아이들이랑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득을 할 수 있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게 교화와 학생의 인권이나 선생님 교권이 동시에 상승한다. 체벌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는 건 무의미하다. 12년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쓰 : 와서 속시원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시쯤에는 끝내야 한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수 있게 정리해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 있는 거 같으니까 좀 더 들어보겠다.

김\*\* : 저희 의정부고등학교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서

학생 참여가 안 됐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2주 전에 교칙 개정한 게 발표됐다. 일방적으로 교칙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화가 났는데, 그때가 기말고사 전이라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기말고사 후에는 의욕도 없고 방법도 생각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어쓰 : 죄송할 것까지야;

김\*\* : 이렇게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와중에서 초중등교육법인가 뭐가 말도 안 되는 게 개정된다는데 참 억척 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김\*\* : 아까 계속 교장 이야기 해서 교장 선생님은 웃긴 거 같다.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할 때 악법적으로 할 때는 힘이 강하신 분인데 인권을 존중하려고 할 때는 힘이 없는 분이 된다. 제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다. 학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못한다. 무서워서. 그래서 난 학생회장도 아닌데 많이 얘기를 했다. 제가 가서 저 선생님이 때려요 이르기도 하고, 뭐 바꿔주세요, 하기도 하는데. 학교 수업 같은 거 지루하다 준비물 지원해달라 하면 아이고 우리 학생 공부 열심히 하네 하며 참 잘해주신다. 그런데 두발 규제 이런 말만 하면 그건 학부모 위원들하고 선생님들과 논의해야 해서 말해주기 힘들다. 교장선생님은 힘이 없다 말하신다. 결국 제가 학교에서 학생기 들고 그랬는데... 교과부가 교장선생님이랑 친한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을 학교 최고로 만들려는 건가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교장 선생님 힘 충분히 강하다. 예를 들어 축제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학생회랑 힘 모아서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듣던데... 교장 선생님이 축제 한번 열어야지 하니까 축제 바로 열리고 그러더라.

뚝코 : 학교에서 적극 해보신 분들인 오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도망친 케이스. 19살인데 고3이어야 하는데 그냥 19살이다. 학교를 고등학교 1학기 끝내고 자퇴했다. 제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학교에 8시까지 못 나가고 11시까지 야자 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나왔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애들은 견디는데 너 왜 못 견디느냐고... 왜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건 줄 알았다. 사실 사람이 하루 8시간은 자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학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정당하다는 걸 깨달았다.

영상고 : 저는 서울 영상고등학교라고 실업계를 다닌다. 인권에 대해 잘 몰라서 들으려고 왔는데 계속 마스크 얘기하시고 그래서 한 마디 하려고 한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인권조례가 생기고 생기려고 하면서 동영상 저희가 보게 됐는데, 저희가 영상 배우는 학교이다보니 영상 출처를 따라가보게 됐다. 근데 영상 출처가 경기도나 서울이 아닌 쪽에서 나온 거고 다 날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인권발휘 전에 찍힌 동영상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동영상 첨부해서 올리더라. 참 그렇고... 교장 독재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많이 독재적이셔서. 어떤 걸 하나면 작년 졸업한 형들이 자기들이 수업 시수를 못 채워서 졸업 못 시키겠다고 해서 졸업을 안 시켰다. 그런데 시수를 다 채우고 그 뒤에 졸업을 했다. 근데 그런 사례를 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저희가 학생 모임 가질 때 너희도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학칙 안 따르면 너희들 유급시키겠다. 이게 학교 최초로, 유급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가 잘 해라, 얘기하더라.

정말 화날 수밖에 없다. 저희 선생님도 그렇고... 인사 잘하라고 항상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는 교장 선생님한테 해맑게 인사 하면 무시하고 지나간다. 시키니까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으시는지 참 의문이고, 초중등법시행령에 관해서 독재가 심하게 된다면 특히나 우리 학교가 사립고등학교고 재단이 교회라서.. 지금도 독재적 독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법으로까지 된다면 학생들이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다영 : 학교에서 받은 체벌 같은 거 곱씹으며 생각해왔다. 체벌이 되게 보통 어른 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뭐 사랑의 매고 너네 잘 되기 위해서 가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체벌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라고 제가 이런 활동하는 거 아시면 그런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 체벌을 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받은 체벌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절대 한 번도 제가 뭐 체벌을 받아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체벌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잘 되어서 저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이런 교사도 있었다. 감정이복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다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는 강도 빈도 세지고 체벌을 자기 스트레스 해소로 보는 교사들도 되게 많았다. 그래서 되게 밖에서 뭔가 체벌을 너네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뤄지는 거야 할 때 보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경마하는 말이 생각났다. 말 빨리 달리라고 매질을 한다. 착착착. 기수가. 그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달리게 착착착 채찍질.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학교가 생각났다. 체벌이 입시경쟁 심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게 뭐랄까 입시와 관련해서... 숙제 같은 거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기.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다 외울 수 없는데 틀린 개수대로 때리거나 그런 걸 보면서 경마장의 말이 생각이 났다.

박\*\* : 전지금 환경 자체가 교사이신 어머니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인 고모도 있고 교수이신 분도 친척 중에 있고. 우리 집안이 좋은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는 사립이고 미션스쿨이라서 좋은 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다른 학교를 보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았다. 제가 받는 거만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간접체벌이라고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 체벌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자격 이런 걸 논하진 않겠지만, 체벌하는 거 자체가 마치 강아지를 기르는 듯이 강아지가 땅 하면 웅크리는 걸 가르칠 때도 안 하면 겁주고 하면 잘 한다고 밥을 주고. 안 하면 겁주고 하면 밥 주고 이런 식이다. 저희도 그런 거 같은 거 같다. 머리를 잘 안 다듬으면 겁주고. 잘 하면 피하게 해주고. 이런 게 좀 약간 너무 저희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너희는 미성년자니까. 주체적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배울 게 더 많다고 여기시니까 저희를 짐승처럼 대하시는 거 같아서 짜증이 나는 면도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원하는 게 성실성인데, 성실하지 못해서 때리는 거고 성실해지게 한다고 때리는 건데, 그 기준이 뭔지... 정해져 있긴 한 건지. 선생님들이나 가정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 아닌지. 그 분들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리시다가 감정 절제를 잘 못해서 더 때릴 수도 있고 더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벌권을, 학생이 말려도 듣지도 않고 다른 교사가 말릴 수도 없게 하고. 교사 분들이 통제권이 나 권력남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막는 조례라는 법이 세워졌는데도 상위법으로 그걸 또 다시 풀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신 사회와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다른 것도 분명한데 너무 인습으로 강요하는 거 아닌지... 선진화시킨다는 명문 하에 학생인권조례를 되돌리는 일을 하신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건의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고 참가를 해도 그걸 안 듣는 어른들...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향해서 대답이 생긴다.

어쓰 : 체벌 얘기 해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직접 체벌, 간접 체벌 말들은 사실 이번에 바꿀 때 교과부에서 발명해낸 말이다. 원래 그냥 체벌이면 체벌이지 체벌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들어가면서 교과부에서 만들어낸 것. 때리는 건 직접 체벌, 기합 주는 건 간접 체벌 이렇게 하면서. 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의 거는 직접 체벌 뿐이고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 그런 꼼수가 숨겨져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런 말 쓰는 거 자체가 마음 아프고 채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간접 체벌이라는 말보다는 기합이라든가 얼차려 등 우리가 쓰는 그런 말로 대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오늘 개악안에 반대하는 성토회인데 슬슬 그쪽 얘기로 다시 가보자. 아까 얘기한 거 말고도 학칙서약식이라고 학칙 준수한다고 서약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다.

문\*\* : 저 박\*\*님 말 동감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생긴 게 공부하게 생긴 애라고 그래야 하나? 그래서 이쁨 받았다. 때문에 그 전까진 잘 못 느꼈다. 직접 체벌 간접 체벌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 저 같이 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 저희 또래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 거 같다.

전\*\* : 저희는 학생인권조례 생기고 우리한테 의견 물어보고 했다? 학생들이 잘 모른다. 인권에 대해서. 설문지가 나가도 대충 적거나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은 학생인권조례 필요 없고 자기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위권... 좀 노는 애들은 그런 건 상관 없이 놀고 싶은 마음에 관심이 없다. 저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있다. 학생들이 관심 많이 가지려면 의식 있는 교사들이 그런 걸 말해야 하는데 교육시키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하는 걸 하려고 한다. 그 선생님이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존경 그런 마음이 없고 입시에 찌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 애들과 노는 애들도 생각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교실이 이뤄지면 좋겠다.

다영 : 교장 재량권 더 더 주고 교장이 마음대로 온갖 학생인권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게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계속 만나왔던 교장 교감 학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직 현장 경력 갖고 있는데 학생인권 잘 알지 않냐, 그게 왜 위험한 일이나 생각하시는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저희 학교 교장도 그랬다. 학생인권 관심 없고, 자기도 교직생활하면서 애들 몇십년 했는데, 승진승진하다가 어찌다 보니 교장이 된 거지 학생인권 잘 알아서 교장이 된 게 아니다. 예가 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범법자한테 법 만드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교장들이 학생인권 잘 알 거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 : 아무리 좋은 방안 대안 많이 말씀해주셔도 결국엔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줄기랑 잎이나 열매가 아무리 이쁘게 열려도 결국 빨리 시들고 나무도 빨리 죽는다. 가장 근본적인 걸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근본

적인 거 교육의 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낸 몇 가지 제안들이 취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 틀이 바뀌어야 한다. 입시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학생들이 아침에 해를 보면서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울 같은 때는 등교할 때 많이 어둡다. 어두운 걸 보고 학교 가면 저도 어두워진다. 아침 등교 시간 좀 늦추고 해를 보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 학교만의 특성을 살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학원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맘만 먹으면 국영수는 학교에서 풀로 자고 학원에서도 배울 수 있다. 정규수업 국영수 사탐 과탐 반으로 줄이고 오후에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학생들끼리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토 순례를 한다거나... 이런 교육을 하면 학생인권 인식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은데, 이러니 식으로 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의 행동이 바뀌고, 학생의 행동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김\*\* : 저는 천안에서 온 고등학생 김\*\*이라고 한다. 간접체벌이 구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학생들 체벌 입고 엎드려 뺨쳐 하면 모욕적.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체벌, 친구들끼리 서로 박치기 시키거나 자기 주먹 들어서 때리게 하는 거 시키곤 했다. 간접체벌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간접 나누는 거 되게 의미 없다.

교장독재도, 선생님이 신이 아니지 않은가.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수행평가 점수를 깎았다. 근데 수업 시간 중에 한 마디도 안했다. 선생님이 잘못 아신 거다. 선생님이 완벽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건 좀 아닌 거 같다. 학생들이 나이가 모자라다고 해서 성년 미성년 그런 건 아닌 거 같구요.

배경내 : 질문 있는데 천안은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이 안 됐는데 천안은 체벌이나 이런 게 더 심각하다고 느끼시는가?

김\*\* : 저는 여학교고 체벌이 거의 없는데, 남학교는 좀 심하다고 들었다. 중학교 때도 심했고...

이\*\* : 저는 멀리서 무주에서 왔다.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된 거 보고 짜증나는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좀 기뻐다. 아까 사회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접체벌이라는 꿈을 쓰게 된 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 같다. '사랑의 매' 같은 거 운운하며 체벌 정당화하던 시절보다는 발전한 거 같다.

영상고 : 들으려고 왔는데 하고픈 말이 많아져서. 사회자 분이 학칙 서약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다보니 교장보다 교목선생님이 위에 있다. 교목 선생님이 종교가 무엇이나 종교 조사할 때 학교 째릴까봐 기독교라고 적어 냈다. 기독교 조사서를 들고 오시더니 종교에서 기독교 안 쓴 애들을 왜 너네는 기독교라고 안 하냐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올해 온 친구들부터는 종교 서약서라고 해서 기독교 아닌 친구들은 못 들어온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도 째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

출석정지 얘기도 나와서. 그 친구들 중에 저희 학교가 좀 심하다. 이제 애들 못 때리니까 벌점제랑 출석 제도를 좋아한다. 애들 다른 데 보내고 출석 못 하게 하고 유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공부하면

서 EBS 다큐 학교는 무엇인가 보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 학생이 학교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학교를 학생에게 맞춰보면 학교는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이 저희와 소통,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해서 학생을 바꾸려는 법보다는 선생님들과 학생을 맞추려는 법이 나왔으면 한다.

김\*\* : 학교가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곳인데 교장 입맛대로 교칙 개정을 한다는 게 저기 북쪽 동네 북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면 절차부터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최\*\* : 아까 학교가 바뀌어야지 대학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뀌어야지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학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런 데 안 오는 이유가 입시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입시제도는 대학이 만든 거고, 대학교는 대학교가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거다. 입시제도 학벌주의를 없애야 사회가 변할 수 있고 학생이 변할 수 있다. 고등학교도 입시제도가 없어야 진짜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나름 엘리트라고 외고 가는 친구가 이리더라. 그 친구 꿈이 검사인데, 저보고 학교 망신이라고 하더라. 학교 문제 학교장이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다. 그런 애가 검사가 되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될까. 차라리 검사는 성적이 아무 중요성도 없다. 아무리 외국어 잘 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 하면 뭐하나. 그런 검사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데 도움 줄 뿐이지, 발전시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아이가 진짜 검사가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검사 이런 거 뽑는 기준이 학업이 아니라 의식 수준을 보고 뽑아야지 아무리 의식이 좋아도 현실은 성적이 나쁘면 관검사 못 된다.

다른 분이 학교 선생님은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한 마디만 하면 다 된다. 인쇄만 남은 상태에서 교장이 한 마디 안 돼, 하면 백지화됐다. 학생회 담당 선생님도... 아까까지 인쇄 해오신다는 선생님 어디 가셨고, 와서 안 된다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떠들지도 않았는데 깎으셨다 하셨는데,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끌벅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 한 마디라도 해야지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건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학생이다. 그런 학생 수행 평가 깎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온 선생님들이 교장이 된다.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의견 표명하다가 마찰 생기고 징계 당하고... 그런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교장 선생님 말 따르고 때리고 학생 헐박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학교가 악순환이 되는 거고... 교장 선생님이 너 사회 부조리를 보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선생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훈화를 하고 체벌 금지 조치 이후에 자기가 제일 먼저 체벌 규정 없애겠다고 너네들 잘해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걸 봤다. 그래서 왜 때리시냐고 따지니까 저보고 올라가라고 화를 냈다. 니가 무슨 영웅이냐고. 그럼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니 니 맘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더라. 나중에 불리서는 그때는 교장 선생님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그러셨다. 체벌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든지...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니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 갑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등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 뽑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의식 가진 교장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과부 말에 잘 순종하고 교육청 말 순종하는지 갖고 뽑는 말도 안 되는 교장 뽑는 방식이다. 사회부터 바뀌고 교장 뽑는 방식부터 바뀌

어야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이\*\* :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맹목적으로 학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게 아니다. 정규수업 줄이고 특색 가지고 교육을 먼저 바꾸자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게 전제가 된 후에 학생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

최\*\* : 입시제도 때문에 아침에 빨리 불러들이고, 선생님도 아침에 빨리 오기 싫어하는데 교장 교감한테 욕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 급식 선생님이... 불평하지 마라 자기도 몇 십년 째 먹고 있따.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먹는다 그러지 말라고.

한날 : 입시 제도는 누가 바꾸는 건가?

최\*\* : 나라 구성원들이 바뀌야 한다.

이\*\* : 교과부에서 학교장 재량 이렇게 하는 게 쥐약이라고 생각한다. 입시제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재량에 대해서 짧게 말하겠다. 저희가 바보는 아닌데, 교과부가 알면서 그러는 거 같다. 선생님과 학생과 교장이 이 세 관계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야 이런 게 가능한 것이다. 저는 대부분 학교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교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학교장 재량은 학교장 니맘대로 하라고 한 거나 다름 없다. 인권조례 신경 쓰지 말고 대학 잘 보내도록 하라고 한 거랑 다름 없다. 학교장 재량 시행되려면, 학생 자치가 완전히 독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장과 수평적 관계가 보장되어야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민주적으로 돌아갈 거다.

최\*\* : 아무리 수평적 관계여도 학교장한테 재량 주면 안 된다. 다 수직적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엄청 수직적이다. 한마디도 못 하게 하고, 말 하면 니 인생 고달파진다고.. 지금도 충분히 수직적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에게는 재량을 뺏어야 한다. 교과부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같다. 얼마 전에 백분토론 보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교총 회장은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지금 생각하는 꿈의 학교, 우리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한 학교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단위 학교 재량을 주면 단위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가 잘 모여서 잘 이야기 할 거라고 하더라. 그거 듣고 학교 가보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답답. 그 분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 같진 않다. 저희 학교도 교총 하는 분들 보면 인권적이지 않던데 별로, 교총 대표 분은 인권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무래도 교총 회장 분이 현실을 모르는 거 같다.

어쓰 : 토론회가 되고 있는데 여기 100분 토론은 아니다. 이런 자리 좀 가지면 항상 말씀하시던 분이 많이 하시고 조용히 있으신 분은 2시간 3시간 한 마디도 안하고 그런나. 그러면 좀 재미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안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다.

이\*\* : 저희 학교는 방학 중에도 겨울방학도 1주밖에 안 쉬고 봄방학 중에도 학교를 나온다. 안 나올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억압을 한다. 그 방학보충에 안 나간다고 결석이나 지각 보고를 받고 생활기록부 적는

란에다가 자기가 학교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았다. 방학보충 출석 여부를 반영을 해서 적는 란에 적으려는 거. 그래서 화가 나서 문자로 얘기를 했다. 방학 보충은 자유 아니냐고. 선생님이 그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나와야 한다고 답장했다. 완전 웃기지 않냐? 웃겨서 하루 종일 웃었다. 방학보충 나가겠다고 자신과 약속한 적도 없다. 학교가 강제로 한 약속이 저하고 한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학교가 좀 웃긴 게, 두발규제가 거의 없어지는 거 같다. 머리 길이가 자유로워졌는데 치마 신발 아직 규제를 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아자 빠지면 교감선생님한테서 엄마한테 문자가 온다. 왜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장 재량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 같아서 화가 나고 그랬다.

고\*\* : 저는 일반 학교에 다니질 않아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말 안 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내가 내 행동을 남이 제약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다. 여기 막 이런 데 와서 인턴 하면서 얘기 들으니까 하라고 시킨다고 한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성인인데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문제를 옆사람 거를 베껴 썼다고 감독관이 때리거나 엎드려 뺨쳐 시키진 않는다. 왜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가 우리한테 통용되지 않는 걸까 생각도 들었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통제할 권리가 있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이 간접 체벌 비슷한 거라도 했다면 학교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심\*\* : 저 분이 학교에서 반항아로 찍히신 거 같은데 저도 굉장히 찍혔다. 상벌점제도 100점 퇴학인데 MB 옹호하는 선생님께 반기 들었다가 80점 받았다. 일제고사 반대한다고 시험지 서술형 답안지에 반대하는 글 썼다가 불려갔다. 입시제도가 위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아래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 입시생들이 전부가 수시원서를 쓰지 않고 수능을 보러 가지 않는다면 바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뀌긴 굉장히 힘든 거 같습니다. 권력의 맛이 좋다고 하더라. 저도 예전에 꿈이 검사였는데 제가 검사가 돼서 비자금 50억 줄 테니까 이거 수사 한번만 하지 말아라 하면 저도 50억 받을 거 같다. 그러니 권력 맛도 모르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 없을 거 같다.

심\*\* : 과연 우리나라 정부는 입시제도를 없앨 거 같냐? 프로야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호라고 몸무게 100몇킬로 나가는데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도루할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쓰 : 그런 행동은 한두 명이 해봤자 그 한두 사람 인생 말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 같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야기하면 좋겠다.

김\*\* : 아까부터 계속 나와서... 좀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성토회 나와서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같이 친구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위에 사람들이 바뀌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인권침해 당한 거나 부당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뒷담 좀 까주고 말하다보면 세상을 좀 바꿀 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심\*\*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될까? 저는 일단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인권은 자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의 힘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주체적으로 행동할 생각과 사고력을 준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사회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를 바탕에 두고 있다. 우리가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우리가 사회 나가서 능동적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거기엔 때려줄 선생님도 부모님도 없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끌겠는가? 인권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준다. 학교에서 나 자신을 학교랑 사회를 어떻게 이끌지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힘이 앞으로 사회를 능동적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밝은 사회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상고 : 이런 게 조그맣게라도 더 많이 열리면 점점 커지고 사람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

전\*\* : 요즘에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많이 선전하는데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려면 필수 요건인데 입시제도에서 하는 걸로 왜곡된 거 같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하는데 입시에 맞는 인재가 되는... 자유가 많이 필요한 거 같다, 학생들에게.

어쓰 : 앞에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주셔서 기에 놀릴 거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마무리 멘트도 비슷했던 거 같다. 성토대회라고 했을 때 같이 모여서 짜증나는 얘기 했을 때 속 시원해지려고 와서 털어놓고 간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아시원해 말 잘했다 하고 돌아가서 끝내기보다는 오늘 얘기하면서 느꼈던 짜증이나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헐 이랬던 느낌도 잘 기억해서 앞으로도 좀 학교 많이들 다니시니까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간 광고를 하자면 이 개악 관련해서 내일 2시에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2시에 초중등교육법 개악 토론회를 연다. 시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리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며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 기조발제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위헌성  
- 학생인권 · 교육자치 훼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상 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 들어가기

지난 1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교육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sup>1)</sup> 이 방안은 ①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 대두, ②준법의식,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필요성 증대, ③문제행동 및 위기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생활지도 방법 전환 필요 등을 추진배경으로 삼고, ㉠학생의식 변화와 교사의 지도방식의 괴리, ㉡폭력적인 청소년 문화 만연,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 등과 같은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나름의 대안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즉, (a)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 활성화, (b)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c)기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등의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그 각각의 지향점에 대하여 3-4개 정도의 중간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슬로건의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선언을 제시하면서도 그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것을 재확인하거나 약간의 윤색을 한 수준에서 재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의지나 현실적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것들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교육현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학교에서의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의 것이라 할 수 있는 학교의 governance체제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가 없이 그냥 슬로건 몇 개로 다른 의지를 가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이 교육부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명제는 학생의 형식적인 참여와 학칙의 엄정한 집행, 학교장에 대한 광범한 재량권의 부여 등의 형태로 “자율”은 명목에 한정하고 “책임”만 무한 확장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학교생활을 훈육과 통제, 폭력과 억압의 학교 수용의 형태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육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인 것이다.

실제 이런 점은 ①학교의 교육권력을 보호하고 학내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학칙의 준수를 강조하며 학칙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②학생징계의 수단으로 새로운 방식들, 특히 ‘출석정지’제도가 도입되며, ③간접체벌이 허용되는 반면 ‘벌’에 대한 적법절차적 통제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④학교에 대한 감시·감독의 과정에서 교육청으로 상징되는

1) 교육과학기술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안),” 2011. 1. 17(이하 「교육부안」)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국가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잘 나타난다. “선진화”를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혹은 오히려 과거의 권위주의적 학교운영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수구적인 교육행정이 탐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 점들을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체계, 그리고 교육현장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물론, 이 교육부안은 원칙이나 슬로건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경청할 만한 명제를 제시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그 명제들을 실천하는 중간목표나 정책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보다 상위의 이념들—헌법상의 기본권보장, 인권보장의 국가·세계이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요소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주로 체벌의 문제와 ‘학생 자율’ 또는 ‘학교 자율’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 2. 체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 2.1. 체벌이란?

체벌은 학생에 대한 징계벌의 일종으로 학생의 신체나 지각에 일정한 힘을 행사함으로써 그 학생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체로 체벌의 정의와 관련 “교원이 교육활동 중,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sup>2)</sup>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정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편협하다.

①이 정의는 학생의 고통이 아니라 교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체벌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교육효과를 가지는가 혹은 교원의 교육권력에 어떻게 봉사하는가와 관련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학생의 인권 혹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는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가 법률로써 통제하여야 하는 하나의 침해작용이다. 따라서 이의 개념규정은 행위자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대상화’되는 그래서, 자신의 인권에 위해를 받게 되는 피침해자, 즉 학생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이 정의는 체벌을 하나의 행위로만 규정할 뿐 그것이 ‘벌’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체벌은 징계‘벌’이다. 학생의 어떠한 행위를 무가치(즉, 악)한 것으로 ‘선언’하고 그에 대하여 법과 정의(혹은 교육)의 이름으로 일정한 법집행자가 그 무가치판단의 효과를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죄형법정주의(비록 그것이 완화된 형태라 하더라도)에 입각한 적법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③‘벌’은 언제나 사회적 낙인을 수반한다. 그 낙인의 대상이 학생의 행위이든 아니면 학생 그 자체이든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법집행자의 판단 혹은 그를 둘러싼 공동체의 판단이 선행하거나 혹은 그에 수반된다. 그래서 벌을 받는 자는 두 가지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벌로 인

2) 김석언, “체벌금지를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체벌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2009.3.12, 33면



하여 직접적으로 받는 고통과 벌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가지는 사회에 대한(혹은 사회로부터 오는) 고통. 차별의 정의는 이 점에서 반드시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후자의 판단에는 개인심리의 측면뿐 아니라 그 학급, 학교 사회 혹은 또래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창피함, 당혹스러움, 열등감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8에서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신체적”혹은 “물리적” 차별을 물리적인 힘이 사용되고,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 혹은 불편함을 유발하도록 의도되는 모든 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 신체적인 차별은 항상 굴욕적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잔혹하고 굴욕적이어서 동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기타의 비 물리적인 형태의 차별 역시 존재한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경시하는 것, 창피를 주는 것, 모욕하는 것, 책임을 전가하는 것, 위협하는 것, 겁을 주는 것 혹은 아동을 비웃는 것이 포함된다.<sup>3)</sup>

이런 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우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분류되고 있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일반논평8에 의하면 차별에는 소위 “직접차별”(손이나 도구-채찍, 막대기, 벨트, 신발, 나무 숟가락 등으로 때리는 것(“찰싹찰싹 때리는 것”, “뺨을 때리는 것, 혹은 철썩하고 때리는 것”, “엉덩이를 때리는 것”), 차는 것, 흔드는 것 혹은 아동을 던지는 것, 할퀴는 것, 꼬집는 것, 무는 것, 머리카락을 당기거나 뺨을 때리는 것, 화상을 입히는 것, 데게 하는 것 등)뿐 아니라 “간접차별”이라 일컬어지는 행위(불편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억지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것(그 예로 비누로 아동의 입을 세척하거나 매운 향신료를 삼키도록 강요하는 것) 등이 아무런 분간 없이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때리는 것이나 토끼뽀이나 학생의 행위를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하여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는 한편,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는 보다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낙인효과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요컨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은 그 실질에 있어 구분하여야 할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sup>4)</sup> 더러 학생에 대한 폭력을 은폐·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인권적인 분류법에 해당하게 된다.

②이런 정의는 ‘물리적·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 혹은 사회심리적 고통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위의 일반논평8에서 말한 경시하기, 창피주기, 모욕하기, 책임전가하기, 위협하기, 겁주기, 비웃기 등과 같은 “잔혹하고 굴욕적인” 심리적 고통도 포함된다. 즉, ‘벌’의 형태로 가해지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적 차별”<sup>5)</sup>은 물론, 학교현장에서 없지 않는 폭

3) 일반논평8 (2006) 신체적 차별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특히, 제 19조, 제28조제2항, 제37조) para.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윤리위원회』 2006, 155-6면(이하 「일반논평8」)

4) 특히 피징계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다.

언이나 욕설, 비아냥거리기, 창피주기 등과 같은 언어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 2.2. 체벌에 관한 현행법 규정과 그 허용여부에 대한 몇 가지 오류들

하지만, 우리 법제에는 이러한 체벌과 관련한 규정은 거의 백지 상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에서 받아 징계의 종류를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①체벌은 엄연히 징계‘벌’이며 학생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은 체벌뿐 아니라 모든 징계에 관한 규정을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이라고 하여 명확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명확성 원칙의 위반), 체벌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도 없이 모든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포괄적 위임 금지 위반).

②체벌을 허용하는 듯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음은 아래에서 보듯 위헌적, 반인권적이다.

③더구나 “신체적 고통”의 여지까지 인정하는 것은 첫째, 학생에 대한 힘의 행사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뿐 아니라, 둘째 “신체적 고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과되는 ‘고통’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 아니라도 행사할 수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다.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이나 기본권에 대한 무한정한 침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규정들과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대한 몇 가지 법원판결들을 들어 체벌이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외관상 체벌의 행사가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대법원은 여자중학교 체육교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을 폭행한 것에 대해 폭행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에 처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이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sup>6)</sup> 또한 헌법재판소도,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왼팔을 지시봉으로 6회 정도 때린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행위가 “교육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기소유예처분을 하여 형사별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sup>7)</sup> 나아가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뺨을 1회 때린 행위에 대해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

5) 교육부안, 27aus.

6)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7)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헌마206 결정

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기각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sup>8)</sup> 이런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의 학생체벌관련 법령자문에 대한 2010. 7. 29.자 법무법인서울의 의견서(이하 “자문회신”)는 체벌이 현행법상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하였고,<sup>9)</sup> 보수적인 교원단체등을 중심으로 체벌금지불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체벌금지 조치에 대해 “깊은 통찰이 없는 인권구호이거나 포퓰리즘적 온정주의일 뿐”이라고 단정하면서 체벌을 부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sup>10)</sup>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논점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이 인용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판결 및 그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대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은 모두 형법 제20조의 해석에 관한 판단일 따름일 뿐, 체벌 그 자체가 허용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 판결들은 하나같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행은 일단 폭행죄라는 형법상의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결들은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구성하되, 그것이 ‘체벌’ 혹은 ‘교육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 하는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판결에서 체벌 그 자체가 허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방론에 그치고 있다. 이 판결들은 교육현장에서의 체벌이 필요한가? 혹은 그것이 규범적으로 허용되는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체벌’ 행위가 우리 형사법체계하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즉, “체벌”로 인해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판결들이 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항은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중의 하나로서의 「사회상규」에 교사의 “체벌”이 해당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요건 하에서 그것이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가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요컨대 이 판결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체벌”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 즉,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일 따름이지, 현행법상 “체벌”이 교육 목적을 위한 학생지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엄밀히 보자면 “체벌”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8)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9) 특히 이 자문회신은 이런 현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인천지방법원(2009. 4. 23. 선고 2009고단1010 판결)의 판결에서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관시를 하자 이를 마치 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체벌은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가 되는 것인 양 표현하고 있다.

10) 연합뉴스, 「이회창 “교육현장 엉망.. 체벌 제도입해야”», 2010. 12. 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35253>(2011. 1. 22 열람) 그는 다만 “교사가 학생을 함부로 때려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과도한 체벌, 감정에 치우친 보복성 체벌, 학생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체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단서는 이미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며 따라서 그 행위는 그 자체 형법상의 폭행죄 내지는 폭력 행위등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무의미한 언급이 된다.

- ㉠ 체벌 자체가 허용되는가?
- ㉡ 체벌이 허용될 경우 그 절차나 범위, 한계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 ㉢ 만약 체벌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한 경우 또는 허용되더라도 ㉡의 절차나 한계를 일탈하여 체벌을 한 경우 그 제재는 어떠하여야 하는가?

위의 판결들은 ㉠, ㉡의 문제를 직접 다룬 것이 아니라, ㉢의 문제에 한정하여 어떠한 “체벌”행위가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어떠하여야 하는지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실제 체벌문제를 가장 밀도 있게 다룬 헌법재판소의 2005헌마1189사건의 경우에도 체벌의 허용여부 자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학생의 기본권이나 인권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이 맥락에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듯한 초중등교육법(및 시행령)상의 제규정들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 6. 2.자 보고서에서 체벌은 “21세기를 살아가게 될 신세대의 감각에 맞는 효과적인 생활지도 수단이 아니며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육관련 법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는 체벌은 최대한 그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필요악’에 그칠 뿐이며, 이런 맥락에서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관련 규정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이미 완성된 사실로 간주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보니 위의 ㉠에 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이 결정의 주된 내용은 ㉢이며, ㉡의 내용은 방론의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따름이다. 즉, 이 결정 역시 형법 제20조의 해석론에만 집중하였던 것이다. 둘째, 이런 주장들은 형사법의 문제와 교육법의 문제를 상호 혼용함으로써 전자를 가지고 후자를 대체하는 전도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실제 위의 판결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법상의 의제들은 전혀 다루어지지 못 하였다.

- ㉠ 체벌 자체의 허용여부에 대한 법규범들 및 사회적 논의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의 타당성 여부 및 그 해석의 문제 포함)
- ㉡ 체벌에 대한 형사벌 외의 통제방법들(예컨대 체벌에 대한 징계책임 및 상급자(기관)의 감독책임)의 존재여부·허용여부·범위의 문제들
- ㉢ 체벌에 관한 학칙규정들 및 그 절차에 대한 타당성의 검증
- ㉣ 체벌의 주체(학교의 장은 체벌을 교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만약 위임할 수 있는 경우 그 위임의 방법이나 절차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은 체벌이 위의 판결들의 태도에서처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은 그 자체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근의 논의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써 위의 판결들을 원용하는 것은 방증 내지는 간접 증명은 될지언정 그것으로 모든 논의를 종결지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형사법상의 면책에 관한 법리(특히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와 교육법상 정당성의 판단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양자는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안의 문제는 체벌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가가 아니라, 체벌 그 자체가 학교장의 교육권(징계권 혹은 학생지도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며 그것이 다시 교사에게 위임될 수도 있는 것인가의 여부이다. 그래서, 위의 판결들은 체벌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의 근거로는 적절한 것일 수는 있지만, 체벌을 한 교사들을 징계한다든가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는다든가 혹은 학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처우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의 사유로 한다는가 라는 형벌 이외의 제재수단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는 전혀 사용될 수 없다. 아울러 이 판결들은 체벌 자체의 허용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판결에 이르는 재판의 과정에서도 체벌 자체의 허용여부에 관한 변론이나 그에 대한 참고인의견 등이 제출되는 등 나름의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밟지 못 하였던 만큼 그 법적 기속정도 또한 그리 크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인 만큼,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는 전혀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논의구조는 체벌에 대하여 허용 내지는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외국의 법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체벌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지만,<sup>11)</sup> 이때 합헌판단의 대상이 된 것은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형법상의 면책을 규정한 형법 제43조(모든 교사, 부모 또는 부모의 지위를 대신하는 자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학생이나 아동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교정의 수단으로 실력(force)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된다)일 따름이다. 체벌 그 자체가 합헌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체벌이 폭행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교육목적을 이유로 그것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형법 제43조를 합헌으로 선언하면서도 체벌은 2세 이하의 아동 및 10대들에게는 효과가 없으므로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론까지 내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체벌을 위헌이라 선언하지 않았지만,<sup>12)</sup> 그 내용 역시 체벌이 이상하고도 잔인한 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실질적 적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집중되어 있을 따름이며 체벌이 교육체계에서 정당하게 인정된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적법한 교육수단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

11) Canadian Foundation for Children, Youth and the Law v. Canada(Attorney General), [2004] 1 SCC 4

12) Ingraham v. Wright, 430 U.S. 657 (1977)

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도 주의 법률로써 체벌을 금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 3. 체벌은 허용될 수 있는가?

엄밀히 보자면, 체벌은 우리 법제에서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는 위법한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 등이 있다.

- 헌법 제6조제1항(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수용),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인신의 자유, 적법절차), 제37조제2항(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제1항 및 이에 대한 아동권위원회의 일반논평8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분설한다.

#### 3.1. 체벌의 위법성: 명확성 및 포괄적 위임금지

##### ① 현행 법령의 구조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에 대한 지도수단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징계: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 기타의 방법: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

여기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 대체로 “훈육”은 “의지나 감정 등의 함양을 통한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작용”을 지칭하는 것인 반면,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훈육의 관념을 징계와 같은 조문에서 편재하고 있는 바, 이 점에서 미루어본다면,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 ‘훈육’의 의미는 “학교의 규율에 복종하는 태도나 그러한 행동을 교육하거나 유발 또는 강제하기 위한 제반의 수단들로 징계와 훈계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②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 개념의 모호·광범위성과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훈육의 개념을 이렇게 본다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선택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그 내용조차도 제대로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것이 되고 만다. 법체계상 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은, 학생의 일정한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일정한 고통—이는 달리 말하자면 일정한 강제력을 의미합니다—을 가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 경우 그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그것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것이 되고 만다.

실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에는 다음과 같이 수많은 유형의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

- ㉠ 일정한 신체적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고통을 가하는 행위: 예컨대, 식사금지, 일정시간 꼼짝 않고 앉아 있게 하기, 고개 들지 못하게 하기 등,
- ㉡ 일정한 신체적 행동을 하계끔 강제함으로써 고통을 가하는 행위: 예컨대 팔 들고 있게 하기, 운동장 달리게 하기, 무릎 꿇고 앉아 있게 하기 등
- ㉢ 신체에 일정한 힘을 가함으로써 고통을 가하는 행위: 예컨대, 구타 등
- ㉣ 고통을 유발하는 일이나 노동 등을 강제함으로써 고통을 가하는 행위: 무더위에 운동장 청소시키기, 청소용구등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채 화장실청소나 쓰레기장 정리의 업무 부과하기 등
- ㉤ 학생의 자존감이나 자긍심을 심히 손상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 ㉥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자기 행위의 무가치성을 드러내게끔 함으로써 수모감이나 창피함을 느끼게 하기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행위유형들을 예정하고서도 그것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목적”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실제 “훈육”의 목적이 학교에서의 “기율”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율”의 실체는 학칙이나 각종의 학생규범에서부터 교사의 명령, 지시, 또는 학교에서 통용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사회규범에 이르기까지 결코 특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조차 변하기 십상인 것들이다.<sup>13)</sup>

이에 대하여 교육현장은 포괄적 지배가 가능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별행정법관계」처럼 법치주의 내지는 명확성의 원칙이 제대로 타당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는 그 포괄적 지배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별행정법관계」라는 범영역 또한 범으로

13) 이런 맥락에서 헌법재판소도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다.”라고 함으로써 체벌과 훈육을 굳이 구분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

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아니며, 특히 인신의 자유와 같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아무리 특별행정법관계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근거가 상실되고 만다.

결국 시행령 제31조제7항에서 말하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라는 규정은 그 자체 명확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원칙 등 별도의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문언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③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시행령 제31조제7항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그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은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타의 방법”에 대한 입법을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 학칙 등에도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은 이런 입법위임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모법이 위임한 “기타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은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체계 및 교육관계법의 틀 속에서 그 입법권한의 제한을 받는다. 즉,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체제상 다음과 같은 입법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2조(인신의 자유), 제37조제2항(기본권제한에 있어서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은 국가 또는 사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실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징벌을 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함(1991. 12. 20 비준)으로써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1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을 금지하여, 명문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을 금지한다.(이에 관하여는 후술함)

더구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에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물론 전술한 UN아동인권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인권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수권기관인 대통령(혹은 구체적인 입법제안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시행령의 내용에서 제외하여야 했으며, 따라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은 삽입하지 않아야 했다. 시행령 제31조제7항에서 말하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은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상위법인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무효인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이 훈육을 간접훈육(예컨대 “얼차려”)과 직접훈육(예컨대 구타)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교육형편상 전자는 불가피한 면(만약 이도 부인한다면 오히려 직접훈육이 증가할 위험이 있



기 때문에)이 있지만 후자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sup>14)</sup>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이런 유보조치 조차도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논의는 근거를 상실한다. 우선 직접훈육과 간접훈육은 그 구별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이런 구획에 의한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그뿐 아니라, 간접훈육이든 직접훈육이든 현행 법체계상 초중등교육법의 명문규정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전혀 없으며, 그럼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그 자체 위헌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현행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 내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 관련법에 반영토록 한다”는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1997. 6. 2.자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입법취지에 비추어본다면 “얼차려”와 같은 간접훈육 역시 “구타”와 같은 직접훈육과 다름없이 “교육적 효과보다는 학생의 정신적 상처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며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풍토”를 저해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간접훈육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입법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규정한(또는 규정하였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 내지는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고 “교육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우리 헌법체계상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3.2. 체벌의 위법성: 실체적 위헌성

#### ① 헌법규정

헌법상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제12조 및 적법절차를 선언하는 제13조의 규정,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면서 인격권의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제10조 등의 규정은 체벌의 헌법적 정당성을 박탈하고 있다. 즉, 체벌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점에서 이상하고도 잔인한 형벌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실제 따라서 근대 법체계에서는 형사범죄자라 할지라도 체벌을 가하는 것은 반인권적일 뿐 아니라 위헌적인 것으로 금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과거 싱가포르의 회교 법제가 체벌을 허용하고 있었음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비난하였던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아동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바라보면, 일상적인 체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소유물로서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상징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를 보면, 가정폭력 근절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평등운동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14) 조국, “교사의 체벌과 정당행위”(법률신문, 2008.1.24)

아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차별이라도 절대 용인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아동을 위하여 인격적·신체적 존엄성을 존중 받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추구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동의 지위를 향상하고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sup>15)</sup>

위의 뉴웰의 언급은 이 점을 잘 반영한다. 차별을 행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체에 대한 공격적 폭력일 뿐 아니라 그것은 차별을 가하는 자에 대한 차별 받는 자의 절대적 복종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비인격화, 사물화, (일시적) 노예화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근대 입헌주의가 가장 강력하게 배척하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적나라한 침해가 된다. 나아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권을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목적”이라는 명분만으로 학생들에게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인격체로서의 학생들을 다른 사람들과부터 구별하고 차별한다는 점에서 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교육목적”이라는 모호하고도 막연한 개념만으로 학교재학생들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분리하여 후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차별을 전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평등의 원칙을 다루는 사건들에서 경우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신의 자유, 인격권)와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의금지원칙을 넘어서서 엄격한 기준에 의한 비례성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 차별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로 하며 만약 “차별취급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하여 차별로 인한 불평등의 효과가 극심”한 경우 위헌적인 차별<sup>16)</sup>이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선례에 비추어본다면, 다른 생활영역에서는 차별이 전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학교에서만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을 다른 국민들과 분리된 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열등한 능력이나 지위를 부여하는 셈이 되어 이는 자의적인 분리이자 동시에 그 교육효과에 비해 이런 차별로 인한 불평등이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연령대의 미성년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소년원이나 각종 작업장(소위 아르바이트학생 포함), 캠프와 같은 사설 훈련소·교습소 등에서는 차별이 금지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도소, 작업장 등 성년의 사람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차별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 차별의 존재를 잘 부각시킨다. 규율에의 복종 및 준수가 학교 이상으로 강하게 요청되는 어떠한 집단체제에서도 차별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학교에서만 “교육목적”이라는 추상적인 명분 하나만으로 차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피교육자인 아동들을 차별하

15) 피터 뉴웰, 「차별 금지 및 근절의 인권적 당위성과 세계적 진전 상황」,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차별 금지와 교육적 대안 모색』, 4-5면

16) 소위 군가산점사건,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는 것이 되는 셈이다.

## ② 국내법으로 수용되는 국제조약

이런 체벌금지는 헌법뿐 아니라 UN아동인권협약 제19조 제1항에서도 금지되고 있다. 이 제1항은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여 어떠한 목적, 이유에서든 관계없이 그리고 그 폭력의 유형이나 대상에 관계 없이 금지할 것을 정한다. 특히 이 규정은 신체적 폭력과 같은 위치에 정신적 폭력을 규정하는 한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그 어떠한 비인격적 처우의 가능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체벌에 대한 금지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아동권리위원회, 제8차 일반 코멘트, 2006년, “체벌이나 다른 잔인하거나 모욕적인 형태의 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 para.11), 이때 체벌이란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물리력을 사용하는 모든 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금지조치는 당사국들이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협약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인권법체제는

아동권리위원회 외에도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등 관련 UN 인권협약기구들도 모두 체벌을 부정하고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아프리카 아동권리복지전문가위원회(Africa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Rights and the Welfare of the Child) 등 각 지역별 인권기구도 역시 체벌을 부정하고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에서는 형벌제도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 반대하는 판결이, 또 다른 국가에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에도 반대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sup>17)</sup>

이러한 국제인권법 체제에 대하여, 2007년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명시적으로 UN아동인권협약의 규정을 학교의 장의 행위를 구속하는 법규범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이 제18조의4의

17) 뉴웰, 앞의 글, 9-10면. 여기서는 인권권고사항 및 고등 재판소들의 관련 판결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www.endcorporalpunishment.org](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를 참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규정은, UN아동인권협약상의 차별금지규정을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에도 타당하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그래서 이에 의할 경우 더 이상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차별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18조의4의 규정은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작용되어 차별과 관련한 조항들을 학칙에 삽입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규정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인권법규정의 통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헌법 제5조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그 중의 하나인 UN아동인권협약은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법률 이상의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만큼 시행령은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UN아동인권협약은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1991. 9. 2. 국제법으로 공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990. 9. 25.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 12. 20. 일부 규정<sup>18)</sup>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내의 법률관계들을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변형주의(별도의 국내입법이 있어야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짐)와 수용주의(별도의 입법이 없이 가입한 사실만으로 곧장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게 됨) 양자의 틀 중의 하나를 취하는 등 상이한 모습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수용주의의 입장을 취하여 가입 즉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라북도의회가 학교급식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만 공급할 것을 의무화한 조례를 통과시킨 사건에서 GATT 및 그에 의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19)</sup>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지나친 국제법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가 별도의 국제조약이행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상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법리는 조례뿐 아니라 시행령과 같은 법률에 하위하는 법규범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의 경우 가입 즉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즉, UN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유보를 한 일부 조

18)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008. 10. 16. 유보철회),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 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정이 유보되었다.

1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법, 적어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시행령보다 상위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UN아동권리협약이 시행령 제31조제7항을 입법함에 있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상위법임을 의미한다. 즉,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법률에서 이 UN아동권리협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도 이 모법의 타당성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그 시행령은 UN아동권리협약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입법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도 없이(모법은 단순히 “기타의 방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따름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고 말았다. 결국 국제법준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체계와 이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감안할 때,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제1항에 위반한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상위법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3.3. 정리

요컨대, 체벌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그 근거규범이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과 더불어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생에 대한 징계에 관한 근거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의 내용이나 이유 등에 대하여 하등의 규율을 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개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위임의 금지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그 위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함으로써 입법위임의 대상조차 분명히 특정하지 아니한 우를 범한다.

시행령 제31조제7항은 체벌을 금지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입법목적에 위반하여 “신체적 고통”의 허용여지를 남겨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사의 요건조차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등으로 추상화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규정방식을 취한다. 아울러 이렇게 도출되는 체벌의 가능성은 헌법이나 국제인권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그 실체적 위헌성조차 안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체벌”과 관련한 두 개의 규정들은 모두 위헌으로 무효화되거나 혹은 본질적인 입법개선이 있어야 한다.

## 4. 교육부안의 문제점

### 4.1. 교육부안의 내용

이러한 체벌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그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다.

#### ① 학생징계와 관련하여서는

-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 ②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율 및 권리 제한에 관해서는
-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③ 그 외 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 폐지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문제는 이런 개정안의 내용들이 앞서 지적한 체벌의 위헌성 혹은 그에 유사한 위헌성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서술하고자 한다.

## 4.2. 학생징계에 관한 개정안

### 가) 간접체벌의 허용

교육부안은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허용”하며, 그 간접적 체벌의 예로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을 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게끔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간접적 체벌 자체의 문제로서 그 상제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 있다. 요컨대, 그것은 직접적 체벌과 구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이 심리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종의 낙인 효과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접적 체벌보다 더 침해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 구분법이 된다. 둘째,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훈육과 체벌은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인 바, 이 교육부안은 “교육적 훈육”의 범주 속에 “간접적 체벌”을 포함시켜 그것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실제 간접적 체벌 역시 일정한 고통을 부과하는 침해적 처분이자 행위무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훈육”이라는 범주에 포섭하기는 어렵다. 즉, 서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을 상호 결합시키면서 마치 “훈육”의 이름으로 “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부안은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절차를 규정한다. 그 안에서 말하듯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이라는 서술은 교사 일방에 의한 즉결심판의 의미를 함축한다. 물론 그 후단에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결정하게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서술의 틀은 학생의 행위에 대한 교사의 즉각적인 반응(징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체벌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 없이 행위에 대한 무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벌’이다. 그렇다면 그에 관한 모든 판단 즉, 행위의 무가치판단(죄의 판단)과 그 효과의 판단(벌의 판단)은 공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미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며 어떠한 행위에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누구로부터 어떠한 종류와 양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결정되고 또 학생들에게 주지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그 절차와 과정에서는 반드시 피혐의자의 진술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혐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항변·방어에 관한 다른 사람의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의 결과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이 적법절차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적법절차의 내용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그것의 최소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령 수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교육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등의 예에서 잘 나타나듯, 징계를 가하게 되는 절차에 있어서의 대립당사자주의적 공격·방어 체계의 확보,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의 정비,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조안·상담권의 실질화, 나아가 징계대상학생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들(징계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 보장 장치의 확보, 교장실 혹은 훈육실에서만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징계를 가하는 교사는 반드시 교장 혹은 훈육전담교사 등 교장의 위임을 받은 특별한 교사일 것을 요구하는 체제 등)이 선행 확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율이 시행령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안은 이런 통제를 방기한 채 오로지 학교에 포괄적으로 일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되려 “즉각 시행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으로 그 자의적 징계권행사를 부추기고 있다.(그리고 이 점은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의 배제라는 시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후술한다)

#### 나) 징계종류의 추가

교육부안은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징계의 종류에 기존의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에 추가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과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는 징계종류를 추가하고 있다.(안 제31조 제1, 3, 5, 6항)

이 중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은 앞서 말한 간접체벌의 근거조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결코 타당한 입법방식이 아니다. 즉,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은

학교에 대하여 일정한 훈계·훈육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인 바, 그 훈계·훈육도 엄연히 그 본질은 징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이는 학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 그 종류나 상한에 대하여는 법령이 규율하여야 할 것들이다. 즉, 이런 식의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그 교육적 효과의 여하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강도로 인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된다. 실제, 이 출석정지는 기존의 특별교육이수와는 달리 출석이 인정되지 않고 결석처리되는 것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처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학생의 승급이나 졸업과 같은 법적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징계처분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징계종류에 대하여는 피징계학생의 재심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이 형평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현행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징계를 오로지 퇴학처분 하나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런 논의의 밖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교육부가 이러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는 징계처분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의당히 그의 도입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작업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집행작용이라 할 것이다. 환언하자면, 이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 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라는 징계종류는 학생의 권리와 지위에 과도한 부담을 남기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상실될 것이다.

#### 4.3.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규율 및 권리 제한

이러 교육부안은 시행령에 제31조의5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원칙규정으로서 엄밀히 보자면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되어야 할 사항이지, 그것이 시행령과 같은 구체적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하위법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 규정의 전체적인 의미가 “학생의 권리보장” 그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신설조항의 제1항은 별다른 의미를 찾기 힘들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여야 할 의무만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약간의 주목을 요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인권보장에 대한 학교장의 의무



를 전방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지원”의 의무로 전환시키고 있어, 행·재정적 한계를 이유로 한 ‘면책’의 가능성을 제공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더 심한 문제는 제2항의 규정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규정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이라는 자연법적, 초국가적, 전국가적 권리를 제2항에서 “학생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안의 설명은 더욱 그 위헌성을 심화한다.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이에 의하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하여 선언되는 학생인권을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로 환원시키고 있으며, 이를 다시 “학내의 질서”에 종속되는 하위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그 인권의 실제적 내용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은 전적으로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것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의하여 부여된 인권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까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한마디로 모법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위법한 위임입법이 되는 것이다.

#### 4.4. 학교의 자율성 보장 조치

그 외 교육부안은 학교의 “자율성”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몇 가지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또한 기본적인 교육체제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미봉의 수준에서 생색내기 혹은 기존의 교육체제가 지향하던 원칙이나 틀 자체를 흔들어 놓는 파행적인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 가) 학칙제정과정의 학생참여

미봉책의 대표적인 예는 학칙제정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안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들이다. 교육부안은 학칙의 규정사항으로 제7호의 학생포상 및 징계 외에 “징계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 7호 전체에 관한 학칙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들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개정방안은 학칙제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던 현행 시행령규정에 비하여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적어도 학생 인권이 보편담론이 되고 그 제도적 보장방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형식으로 추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분명 퇴행이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것은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율사항들 중 적어도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제6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제8호), 학칙개정절차(제9호),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제10호) 등은 학생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로서의 학생들은 의당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이 규정의 형식으로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할 권리와 책무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부안은 이 모든 것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오로지 학생의 징계와 포상에 관련된 부분만 학생들에게 열어두고 있을 뿐이다.

둘째, 그나마 제7호 사항에 대한 것조차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여 의견청취의 의무에 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또한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여 학칙 제개정과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학생들은 그 의견표명의 권리조차 그때그때 방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다.

요컨대, 교육부안은 학교의 “자율성”이라고 하면서도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주 한정된 사항에 대한 아주 형식적인 방식의 의견청취를 아주 편협한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 반대해석의 가능성—즉, 다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생참여의 요구를 배척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을 고려할 때 분명한 퇴행이자 시대역행적인 조치가 된다. 이는 학생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행위자로 파악하기 보다는 규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타자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 나) 방송프로그램의 수업활용

교육부안은 교육에 있어서의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48조 제3항을 수정하고자 한다. 즉, 학교의 장은 종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만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자유롭게 방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수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수업의 내용이나 그 교재의 선택은 학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자유방임의 체제를 취하지 않고 교육제도 법률주의(헌법 제31조)를 비롯하여 교재의 국정제, 검인정제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교육의 내용에 적극 관여하고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9조)

초·중·고교교육에 있어서 교과용도서(教科用圖書)에 국가가 관여하는 이유는 초·중·고교의 교육이 가지는 특성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무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중·고교교육 등 보통교육의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세계관, 사회관, 인생관 등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교육법 제93조, 제94조,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 제105조 참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의 지역별·공사(公私)별·

교육환경별 차이, 교원의 자질별·능력별 차이, 교과와 과목별·내용별 차이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피교육자에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학생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치편향적이거나 왜곡된 학문적 논리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비판하여 선별 수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공교육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어떤 형태로 이에 간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과서제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와 한계의 문제는 초·중·고교 교육의 단계와 교과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방의 교육자치체제를 어느 정도로 허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국가 혹은 교육자치단체가 초중등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관여함으로써 균등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인 생활영역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품성과 보편적인 자질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의 실현에 봉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교과용도서의 사용은 반드시 국정교과서나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실제 전교조 교사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도 서슴지 않았다.

현행의 시행령 제48조에서 수업의 보조재로서의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도 바로 이런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통제의 원칙에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국가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어떠한 교육재료도 교육현장에 편입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만일 이런 제도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 획일성을 탈피하여 교육현장에서의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이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개정안 자체가 전체로서의 초중등교육법의 교육체제와 모순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상위법 위반의 무효인 것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안은 이런 전체 교육체제(regime)를 간과한 채 지엽말단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자유화만을 선언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교육현장의 경직성·획일성을 방치하고, 새로 허가된 종합편성방송국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은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까지 유발하고 있기도 한다.

#### 다)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 배제

하지만, 교육부안에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학칙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권 자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교육부안은 “단위학교의 학칙 제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정비”라는 제호하에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즉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 이런 개정안은 이미 2008 정부제출입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바

20) 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의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물론 외관상으로는 이러한 개정안은 교육청의 통제로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장 유효한 방안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체제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이런 개정안은 현재의 학교 governance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학칙의 개정은 비록 학교운영위원회가 관여하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장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것이 현실이며, 교사(특히 평교사 혹은 기간제 교사)나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즉, 아직도 민주화되지 못한 교육현실에서 교육청의 지도·감독마저도 배제하는 식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학교의 자율화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장의 지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둘째, 이런 개정안은 교육자치의 이념에 반한다.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의 원리는 공권력의 구성·행사·통제를 지배하는 우리 통치질서의 기본원리이므로, 공권력의 일종인 지방자치권과 국가교육권(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교육감독권 등)도 이 원리에 따른 국민적 정당성기반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국민주권·민주주의원리는 그 작용영역, 즉, 공권력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구현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도 지방자치권행사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sup>21)</sup>

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규율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적 요청으로서 입법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헌법사항중의 하나이다. 환언하자면 바로 이런 헌법요청으로부터 관할 지역내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교육청에 부여되는 것이다. 즉, 그 지도 감독권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교육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부여된 자치사무이기도 한 것이다.<sup>22)</sup> 그리고 학교생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학칙에 대한 교육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은 그 단체의 엄연한 헌법적 권리이자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13 결정

22)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고 하여 교육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사정이 그렇다면 입법으로써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된다. 물론 학칙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지도·감독권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론이겠지만, 그 관여권 자체를 완전히 박탈해 버리고 마는 결과를 예정하고 있는 교육부의 개정안은 그 자체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개정안은 권위주의적 국가통제방식의 교육행정을 야기한다. 지금은 교육행정이 국가(교육부) --> 교육청 --> 단위학교와 같이 교육청이라는 중간적 매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듯 “중앙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속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정치권력에 대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 등의 문언들은 이 점을 대변한다. 그것은 국가의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의 교육을 보호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또 다른 방식 중의 하나이다. 나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지방의 문화적 자치를 보호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개정안처럼 이렇게 교육지방자치단체의 학칙통제권을 삭제하게 되면 국가(교육부) --> 일선학교 라는 직접적 대면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학교의 자율성 확보라는 표면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가 곧장 국가적 통제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타율적 존재로 전락할 위험까지도 포태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가(교육부)가 법률이나 시행령 혹은 지침 등의 방식으로 일선학교를 직접 통제하고 이를 통해 교육현장을 장악하는 현상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넷째, 교육부의 이런 개정안은 체계부정합성을 야기하게 된다. 즉 교육부안에서 지칭하듯, “두발·복장, 핸드폰, 소지품, 표현의 자유 등 생활규정에 대한 단위학교의 재량권 확대”라는 목표가 그 방식에 따라 다른 통제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일선의 단위학교가 두발·복장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게 되면 그것은 교육청의 통제 밖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사항”이 되는 반면, 그것을 학칙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나 지침의 형태(예컨대 dress code)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의 관할대상이 되어 그 통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는 학교의 장이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기 꺼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자신의 지배권하에 있는 학칙개정절차를 동원, 그 사항을 학칙사항으로 규정해 버리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동일한 사항이 그 규정형식에 따라 달리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체계부정합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 5. 정리

요컨대, 이번에 급작스럽게 제시된 교육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그 표제의 선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을 과거의 것으로 되돌려 놓거나 혹은 현재의 잘 못 된 학교 governance체계를 재강화하는 수준에 고착시킬 뿐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법령개정의 안들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이 소개되고 또 추진될 것으로 약속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과거의 제안들로부터 크게 달라진 신규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현재 많은 교육주체들로부터 발의되고 또 실험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행정을 주관하는 교육부의 안이라고 한

다면 기존의 교육주체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개선·개혁작업들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진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그것을 국가주도의 방식으로 획일화·관료화하고자 나서는 것은 모양새뿐 아니라, 분권화·자율화라는 시대적 추세에도 거스르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교육부안이 가지고 있는 각종의 개정안들은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위헌성이 농후한, 잘 못된 것들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교육부안은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 그리고 전라북도와 광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관련 조례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아주 정치적인 목적의 방안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게 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교육이 이렇듯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 하다. 더구나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고 상위법에 어긋나며 전체로서의 교육법체계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실제 이 순간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육자치가 지배하는 학교영역에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선뜻 나서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만들고 또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학교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숙고하는 절차부터 선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자면 교육부의 행태부터 선진화하여 교육지방자치단체와 일선학교, 그리고 모든 교육주체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진정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 기조발제 2

교과부안, 교사와 교육을 위한 것인가?

- 학교 현실에서 바라본 교과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향을 중심으로  
최 형 규(수원 유신고 교사)

### 1. 글을 시작하며

작년에 이어 올 해 시작도 학생인권조례와 체벌로 참 말이 많다. 인권이 소중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조례로 -법으로 -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 조례로 인해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는 현실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우리 교육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학교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맞춰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맞고 있다’, ‘학교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다’는 등의 다분히 자극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사회의 호들갑은 교육 현장에 미치는 학생인권조례의 파급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조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 -학생들의 체벌문제나 두발, 복장, 표현, 참여 등-이지만,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기도 한 게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속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생각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육에서 인권은 사치였다. 과도한 경쟁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였으며 누구 하나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보지 못했다. 끊임없는 경쟁과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에서 인권은 단지 사전 속에 존재하는 단어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공포와 서울시의 체벌금지 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은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 영역이 되었고 현실이 되었다.

### 2. 학교 현실과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학생들이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두발 길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던 학교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는 두발 길이에 대해 별 간섭을 하지 않는다. 처음 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권조례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게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지 느끼게 된 것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다.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체벌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머리에 대한 규제도 사라진 학교가 많다. 지방의 인문계 학교에서 방

학 중 보충수업은 대개 반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 학교에서 완전 자율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시작했고 자율학습도 마찬가지다. 체벌 금지와 인권조례로 변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다.

한편, 체벌 금지 이후 교사들이 불만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교사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고 불멘소리를 하는 교사도 있고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발언도 들린다. 이런 교사의 불만은 대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조례제정과정에서의 소외, 다인수 학급에서의 학생 통제에 어려움 등과 관련되어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교사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입시위주의 교육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고, 교사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나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열악한 교육현실이 더해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지금까지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개혁적인 교육활동과 배움의 공동체나 핀란드 교육에 대한 공부와 열망, 다양한 교사 모임의 활성화 등으로 짝 막힌 학교 현장에 조금씩 변화의 숨통이 트여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여기에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체벌 금지 등의 조치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학생생활규정의 개정과정에서 심한 왜곡이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관리자와 교사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교육)에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와 학생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설정되어 학생의 인권보장과 체벌 금지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내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출석정지를 부활하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학칙의 교육감 인가권 폐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지금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문화를 선진화(?)한다는 교과부의 방안은 심각한 문제를 몇 가지 안고 있다.

### 3.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적 고민의 무력화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금지 등의 조치로 촉발된 교육 현장의 변화와 고민은 그동안 학생의 인권에 무심했던 교사와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 전체에 반성적 계기로 작동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비인간화, 수단화시키고 교사는 학생을 관리와 통제에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 속에서 점수와 경쟁이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체벌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학교의 질서와 통제를 위한 간편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당연히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교육적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조치는 인권에 대해 무지와 태만에 빠져있던 교육 주체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었다. 학생들은 조금씩 자신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교사는 통제와 지도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간으로 돌아보고 -학생과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복원- 교육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학부모도 학교와 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에서 자녀의 고민과 진로, 그리고 개성과 일상 생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교육의 3주체가 그동안 생소했고 소홀했던 학생의 인권을 화두로 삼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제 학생 인권에 어떻게 접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사소한 변화도 두려운 법인데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가 학교와 교육 현장에 가져올 변화는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그 고민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논쟁과 고민은 결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학교 혁신과 변화 노력이 교육 주체의 치열한 고민 없이 진행된 면이 많아 실패의 경험을 자주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이처럼 현장의 변화는 주체들의 진지하고 발전적인 대화와 논의가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체벌의 경우를 보자. 체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문제화된 체벌을 금지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이 와야 하는가? 체벌이 비교육적인 방법이라면 체벌을 대신할 교육적인 다른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이 무시되었다면 이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가이다. 왜 학생을 체벌하면 안 되는가의 고민이다. 그건 학생에게도 소중한 인권이 있기 때문이고 교육이 목적은 전인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학생인권에 대한 무심함을 반성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즉 인권과 교육이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고민과 논쟁에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민과 논쟁이 쉽게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대안만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 같다. 단기간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교육의 원칙과 본질을 찾는데 주력해야 한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다고 문제를 덮고 가서는 안된다. 우린 그동안 현실을 이유로 모든 문제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했다. 현실에 맞추다보니 문제의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항상 뒷전이였다. 이제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럼 교과부의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교과부는 체벌 금지로 인한 혼란으로 학교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이 추락한다며 친절하고 자상하게도 손수 그 대안을 내놓았다. 간접체벌의 인정과 출석정지, 학교장의 권한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자 이제 체벌에 대한 논쟁은 그만두고 간접체벌 등을 통해 이전의 체벌을 대신하고 학교의 혼란을 막아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의 조치는 일부 교사의 즉각적이고 손쉬운 통제와 지도 방법(체벌)을 대신할 방법이 없다고 다시 간접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신체적 고통을 합리화하는 우를 범하고 만다. 즉, 합리적

인 문제해결을 포기하고 현실을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간접 체벌도 학생들의 신체적 고통을 바탕으로 하는 통제방식이다. 직접 체벌은 안 되고 간접체벌은 된다는 발상은 인권조례와 체벌 금지의 본 뜻(취지)을 애써 외면한 결과이다. 근본적인 철학과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간접체벌이던 직접체벌이던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문제점들-학생인권의 침해, 입시위주의 통제 중심의 학교, 교사와 학생의 관계단절 등-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주체간의 뜨거운 논쟁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과 학생의 인권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수적인데 교과부의 안은 그런 고민을 회피하려고 고민과 논쟁의 방향을 본질적인 것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돌려버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인권을 위해 고민을 시작한 교육주체들의 치열한 논쟁과 고민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변화는 다시 요원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교과부가 직접 나서서 학교에서 가능한 체벌(간접체벌)과 불가능한 체벌(직접체벌)의 기준을 정해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교과부는 체벌이 나타나게 된 열악한 교육-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실, 교사의 과중한 잡무 및 권리의 제한 등- 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바람직하지 못해 금지된 체벌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혹시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즉,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서울교육청의 체벌금지 및 인권조례 제정의 움직임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4. 진정한 학교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교육활동의 보호와 학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학교의 학칙 결정은 교육감의 인가 대신 학교장에게 맡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이 중요하고 학생의 인권도 학교의 자율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말하는 학교의 자율성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 자율성’이라는 말은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교과부가 제시한 ‘자율성’이라는 말은 바람직하고 타당하고 지향해야 하는 그 무엇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러나 ‘자율화’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깊게 생각해보면 많이 달라진다. 학교의 자율화는 작금의 여러 문제 해결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다. 외부의 간섭 없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반론이 있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엔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학교의 민주주의다. 학교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아 교장과 같은 관리자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 교과부가 말하는 학교 자율성은 그 권력을 가진 자의 자율성에 불과하게 된다. 즉 교장이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자율성은 교장의 전체적 권한을 의미할 뿐이다.

현재 경기도의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공포 이후 학생생활규정의 대대적인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반인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인권친화적인 생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은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학생인권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가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학생 의견 수렴보다 더 분명하게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외 각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과정을 거쳐 재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학교의 자율성이다. 즉, 교육주체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바로 학교의 자율성인 것이다.

조례는 학생 인권과 관련되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주고 있으며, 단위 학교는 그 기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많은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 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학생 참여를 형식적으로만 보장하거나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규정개정심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버젓이 학생생활규정 살아남거나 (교장의 학교 운영방침에 따라)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더 강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학교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의견이 교장에 의해 제한되고 묵살되며, 교사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의견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단위 학교에서 교장의 막강한 권한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학칙 개정과 심지어 학생인권의 제한까지도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교장에게 부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은 교장의 자율성이 아니라 학교 주체들의 자율성이어야 한다.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여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각 주체들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다. 그런데 오히려 교과부는 그걸 무력화하고 교장에게 다시 전권을 부여하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등의 혁신적 조치가 진보 교육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자,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학교나 교육의 변화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교육계의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의 자율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수법은 ‘민영화’라는 말만큼이나 상투적이다. 마치 평온한 교육현장을 진보 교육감이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호도하고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하에 보수적 교장의 지지를 얻고 학교의 변화를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 혼란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주고 -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이 학교의 자율성 침해다 - 교장에게 혼란을 잠재울 칼을 쥐어주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의 자율성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다. 조례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통한 학교의 민주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교과부의 안은 오히려 이를 후퇴시키는 거짓된 ‘학교의 자율성’을 말하고 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교육활동보호와 학내질서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시행령은 위헌의 소지가 강하다.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학칙으로 학생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면 최고법인 헌법을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된다. 학교장이 학칙의 이름으로 (제한, 규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인권의 문제는 교장이 자율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과부의 조치는 인권이 소중한 만큼이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뿐이다.

## 5. 대안과 방향을 고민하며

앞에서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 대안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우선 지금은 학교 현장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의 반성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참 어렵게 촉발된 현장의 고민을 혼란이라는 단어로 부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교육적 관점에서 ‘과정’으로 인식하고 접근하자. 교과부도 마찬가지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할 일이 있고 학교 관리자가 할 일이 있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할 일이 따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민의 방향은 공통적이어야 한다. 인간을 키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교육이 살아야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그것이다. 각 주체는 각자의 이익으로 목적을 훼손하는 목적전치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고민과 참여는 교육적 권리이며 의무이다. 이는 반드시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토대로 고민이 이루어지고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교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작년에 제정 공포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주체간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 현장에 안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고민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자율성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교장 중심의 학교 자율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민주화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사회나 학생회를 법제화하거나 구성원 간의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거나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소외와 학교 현장의 사전 준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교사들에게 불안감과 거부감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수동적으로 교과부나 교육청의 조치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 교사의 변화 없이 교육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교사를 위한다는 교과부의 조치는 오히려 교사의 전문성과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체벌금지로 추락한 교권을 간접체벌이나 출석정지로 보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체벌 없이는 교육할 수 없고 그 무엇인가를 외부에서 손에 쥐어주어야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교사만 존재할 뿐이다. 교과부의 간접체벌 조치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거나 그에 걸맞은 교사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다.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큰 노력 들이지 않고 체벌 논쟁을 교사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 관한 문제는 모두 학교에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문제 학생은 학교의 잘못이고 교사의 잘못이었다. 관리자도 교사도 학생의 모든 문제를 학교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 당당하게 목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다. 가정 교육과 사회의 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이 학교나 교사에 부과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 인권을 비롯한 많은 부분이 가정과 학교, 사회,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문제이지 어느 한쪽의 책임만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체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의 특별한 행동들—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동 등—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같이 고민할 문제를 지금까지는 학교나 교사의 통제, 관리, 지도 부족 등의 차원으로 돌려버린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교사가 체벌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한다. 출석정지도 구체적 고민과 대안 없이 시행해서는 안된다. 단순한 출석정지의 부활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문제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뿐이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행동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경쟁 중심의 구조, 과다한 학급당 학생 수, 교사 권리의 제한 등 다양한 요소가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그런 수직적 관계를 극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으로 만나야 한다. 즉,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임이 분명하다면 이제 학교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인권 친화적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을 미성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고 당연한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학생회의 활성화와 학생 참여의 보장 등 학생 자치활동이 작금의 많은 문제를 해소하는 열쇠라고 본다. 학교 운영을 교사와 학생의 두 축으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학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은 이 점에서 학생참여를 매우 형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실질적인 학생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평등한 교육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과부의 조치에 ‘학교문화’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학교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일이 단기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라고 소홀히 되어서는 안된다. 인권의 문제는 결국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

는 노력은 교실에서의 수업, 식당에서의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 교실의 게시판, 학부모의 학교 방문 등 학교 전반의 변화를 포함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교육의 변화, 학교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고민해야 하고, 가는 길이 더디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방향 만큼은 확실히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6. 글을 마치며

체벌이 화두다. 여기저기서 체벌 때문에 고민하고 대안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과부에서 이런 저런 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급해하다가 교육과 인권의 큰 틀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벌을 찾는 데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런 걱정이 든다. 나쁜 벌(체벌)을 대신할 다른 벌(상벌점, 간접체벌...)을 고민하는 것보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권 친화적인 교수학습은 어떻게 할까 등의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체벌은 교사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학생 행동에 대해 대응하고 또 즉각적인 학생 행동의 교정을 요구한다. 이는 통제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 체벌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체벌은 체벌의 빈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체벌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 이후에 지금 논의되는 대체벌이 들어갈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체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런 과정과 고민이 생략된다면 그 어떤 대안도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가 준비와 대안 없이 시작되었다는 비판에만 빠져버린 책임론이나 교육과 학교의 본질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보수적인 경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교육주체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수단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교육 전체를 보고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변화는 장기적이고 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인간이고 인권은 교육이다.

## 지정토론 1

여교사가 바라본 교육현장과 대안적 방향  
김수현(광명 충현고 교사)

수업 중에 노골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사를 놀리고 폭언도 서슴지 않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마가 긴 여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주자 다음 날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뺨을 때리고 사과는커녕 매 값으로 수표를 내보이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극에 달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권조례 공포 이후 “이제 여교사들은 애들을 잡으려면 인권조례가 폐기되거나 최소한 처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기관에서 나서야만 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이 예상되는(?) 여교사로서 교과부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히고자 한다.

### I.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의 존재

장면1) 종례를 마치고 교무실로 와보니 우리반 아이 한명이 보낸 익명의 편지가 놓여있었다.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이 돈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내가 초임이고, 젊은 여교사라 우습게 보이나 싫어 우리반 아이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졌다. 해결방안을 고심하던 중 학생부장님의 전화가 왔다. 방과 후 복도 구석에서 티격태격 하던 우리반 아이들을 잡아냈으니 데려가 지도하라는 것이었다. 미칠 노릇이었다. 겨우 5월인데, 남은 날들을 어찌 보내야 하나? 교직을 시작하며 아이들과 함박웃음 교실을 만들자했던 나의 로망은 사라져버렸다. 일단 아이들을 데려와 경위서를 쓰게 했더니 편지 내용의 주인공들이었고 나는 이내 분노의 매질을 하고 말았다. 사건의 경위는 이랬다. 나를 사모했던 몇 녀석이 문제였다. 한 녀석은 도덕 과목을 100점 맞고 싶어 1등에게 중간고사 때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으박질러 시험 때 보여주기로 했는데 안보였다며 때렸단다. 또 몇 녀석들은 스승의 날을 기해 나에게 줄 선물(티셔츠)을 사려고 500원씩 걷기로 했는데 몇 명이 안내서 자기들 용돈으로 채워 넣고 열 받아서 뺐다고 했다.

장면2) 신규 때는 애들 앉히는데도 10분 이상 걸리는데, 14반까지 학생부장님이 가위를 들고 돌아다니며 두발지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 돌면서 애들이 웅성거렸다. 결국 다 앉히지 못했고, 애들은 TV 뒤에 숨고 난리가 났다. 학생부장에게 애들이 집중을 못하니 나중에 두발지도를 하시면 안 되냐고 하니, 학교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따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치 애들이 버티듯 이야기를 계속하니, 이런 더러운 꼴을 봤나, 하고 그냥 가버리셨다. 그 순간 애들이 다른 눈빛으로 보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생님, 이제 학생부 끌려가요.”하면서 나를 일진애들이 지도하더라.

장면3) 무단결석 끝에 출석하던 녀석이 오랜만에 나와 불법 자리 교체를 한 뒤 맨 뒤에 앉아 계속 잠만 잔다. 여러 번 주의를 줘도 소용이 없다.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 “오랜만에 왔는데 수업 좀 듣자. 응?” 달려보았지만 성질을 부리며 답한다. “됐어요. 씨X”, “야,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아니에요. 됐죠?”, “이게 싸가지가 없어. 내가 니 친구야?”, “친구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됐죠?”, “이게 정말...” 몇 차례 아이들 앞에서 고성어 오고 가다 화김에 그 아이를 때리고 말았고, 학년이 끝날 때까지 괴로워했다. 그 다음 해 스승의 날,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이 모처럼 찾아왔는데 그 녀석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 아까 주차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본 터였다. “00는 어딴니?” “아, 00는 안 올라 온대요. 선생님 나쁜 선생님이라고.”,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안 왔죠. 그 새끼가 원래 개념이 없어요. 개 학교 곧 때려칠 거예요. 걱정마세요.”

장면 1)과 3)은 초임과 그 다음해에 겪었던 시행착오이며 장면 2)는 교사 인권연수에 참여했던 선생님의 경험이다.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 특히 초임이거나 기간제 여교사는 어떤 존재일까? 장면 1)을 통해 ‘이성(異性)’, 장면 2)를 통해 ‘힘없는 약자’, 장면 3)을 통해 ‘만만한 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화는 금물이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 기사를 읽을 때마다 여교사가 중심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수궁이 갈 법도 하다.

## 1. 학교의 권력 구조

‘평교사도 모두 같은 교사가 아니다.’ 4년차 썸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수평적 조직이라 생각했던 학교가 관료제와 매치되면서 수직적 권력구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이 구조를 학생들이 알아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학교 구조는 교사의 손을 빌어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규제를 가하면서 괜한 긴장감을 유발한다. 교칙을 잘 준수하는 학생들도 입시 준비로 인해 욕구 불만상태이다. 어딘가 배출구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원래 학교가 그렇지.’하며 인내하지만 소수의 일명 ‘싸가지 없는 애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한다. 일반적인 경우 친구들 중에서 고르지만 간혹 교사들 중에서 고르기도 한다.

## 2. 여교사-남학생 구도

최근 교권침해에 대한 언론의 기사(교사에 대한 폭행, 반항, 성희롱 등) 중 대부분의 사례는 여교사-남학생 구도이다. 남자 중학교에 4년 간, 현임교 학생부에 2년간 근무하면서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교권침해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여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면 교사의 성별, 나이를 상관하지 않지만 남학생들이 젊은 남교사에게 덤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일부 남학생들에게 젊은 여교사는 교사와 연상 누나의 경계선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일단 만만하다. 그래서 기간제 또는 초임(저경력) 여교사는 교권 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여교사 성희롱 사건에서 보도할 때도 “일부 교권단체들은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학생 지도를 못한 교사도 문제”라고 보도했다. 여교사-남학생 구도에서는 항상 여교사는 피해자, 자신의 교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당연히 엄한 남교사가 만드는 학교 권력의 우산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 II. 나름 젊은(?) 여교사의 제언

### 1. 학교를 배움과 소통의 공간으로

뭔가 자유를 주면 학교 조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이 통제 장치를 만들어낸다. 학교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그것은 학교 구조 자체의 문제로 인해 시대가 요구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발 제한, 체벌, 강제적 보충 자율학습, 정치적 행동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가 개선하고자 하는 학교의 관행들을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억압적인 관리자와의 갈등, 협의가 없는 수직적 의사 결정 구조, 권위가 권력으로 작동할 때 ‘소통’은 불가능하다. 앞에서 본 ‘학교 현장에서 여교사의 존재’를 검토해보자. 학교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고 진정한 소통이 있었다면 여교사의 교권은 바로 섰을 것이며, 배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 2. 학생인권조례 정착 지원과 기다림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교권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는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교실 붕괴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무책임한 언론이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부 학교 특정 교실에서 벌어진 사례를 부풀려서 보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실 제도가 도입되면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게 된다. 학교 현장은 과거 공장형 효율중시와 군사문화의 영향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하였고 배타적 입시 경쟁만이 남았다. 서구에서 시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200년 동안의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무조건 실패로 단정하고 몰아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언론이 ‘체벌 전면금지 이후 심각해진 교권침해 사례’로 꼽은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은 얼마 전 경찰 수사 결과 체벌 금지 시행 전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 3. 교과부 '선진화방안' 철회

지난 17일 교과부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이라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틀을 앞세우며 "선진사회가 요

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칙 준수의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주장에는 오류가 숨어있다.

첫째, 학교장의 권한 강화이다. 일부 언론은 학생인권이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전면 부여한다면, 교사는 물론 학생의 권리는 침해될 것이다.

둘째, 학칙 준수 서약식 실시이다. 민주적이지 않은 교칙에 서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학생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간접 체벌(기합)의 허용 문제이다. 학교 상황에 맞게 신체를 때리는 행위만 아니면 무슨 체벌이든 허용된다는 이 방안은 학생의 입장에서 오히려 맞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 권리’라는 당연한 논리를 낯설게 여겼던 학교 현장에서 드디어 ‘인권’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을 바라보는 편차가 커서 공감대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현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고, 시간은 부족하다. 하지만 대체 프로그램이나 대안 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례를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이 반인권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선진국의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며 얼마나 많은 교육 관료들이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왔는가? 핀란드에,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에라도 '학교문화선진화방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지 생각해 볼일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자. 학교가 가고 싶고, 행복한 장소였었는지를.

## 지정토론 2

###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중요성

-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변 춘 희(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1. 걱정스러운 아이의 교육환경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아빠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았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들의 수가 무려 만 명에 이르고 이들을 부르는 코피노라는 말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필리핀 여성과 사귀다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는 ‘한국인 아빠’는 당황했다. 아이를 낙태시키라거나 내 아이가 맞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아이의 존재를 알고 어떻게 책임져야하는지 모른 채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이도 있었다.

피임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 문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인 아빠’의 무책임함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한국 남성의 문제를 일반화하여 한국 남성을 비하한다는 반응도 있던데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수십 만 명 이상의 한국남성이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추측하는 게 옳다. 게다가 이건 필리핀 한 나라만의 예다. 결코 극소수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뭘 하러 날아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는 식의 댓글은 생명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필리핀 여성을 무시하는 것, 낙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필리핀의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고 회피하는 것. 한국인 아빠의 이런 점들이 충격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인 아빠의 인권의식이 너무 낮다는 거다. 앞서 말 했듯이 소수라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식이다.

인권의식에 관한 문제는 남성의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 전 중학생인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엄마, 만약에 내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중학생들 사이에 이웃 학교 학생의 임신소식은 예전의 ‘칠공주’ 전설처럼 진실인지 헛소문인지는 모르지만 두루 퍼져있다. 내가 딸아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군가 자기아이는 초등학생 때 이미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래서 “엄마는 너 얘기 못 봐준다.”고 대답했더니 엄마는 어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다. 그런 딸아이의 항의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알고 보니 딸아이가 가정했던 건 사고나 폭력에 의한 임신이었던 거다. 그 나이에 임신을 원했다라

는 것을 아이는 상상하지 못했고, 나는 본인의 선택이 아닌 성관계를 상상하지 못한 거였다. 이 대화는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한 달이나 지나서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를 알게 되었다. 아이는 자신의 몸에 관한 것인데 어찌 타인의 폭력이나 지배를 먼저 생각했던 걸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 보려는 생각보다 세상의 힘에 자기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말이다.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 앞으로 독립적인 자아가 자라면 생각이 바뀌겠지만 아이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걱정스럽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수학시간에 집합이라는 단원이 있다.

집합-그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는 모임.

“엄마, 단정하다가 집합 이예요?”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 당근 아니지. 단정하दा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

순간 딸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학교에서 어찌 참았을까 싶은 얘기를 내게 쏟아냈다. 왜 짧은 치마는 단정하지 않냐고. 검은 색만 단정한 색이냐고. 머리를 묶어야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냐고. 꽃남(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교복은 예뻐는데 우리 학교 교복은 누가 만들기에 이런 모양이냐고.

몇 달 지나서는 교복 가디건을 입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 한분이 잡더라고. 그리고는 소위 날라리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하복위에 긴 가디건을 입은 모습을 가리키며 저게 예쁘냐며 물으셨단다. 딸아이는 속으로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분위기를 살펴보건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었다고 했다. 선생님 눈에는 하얀 하복 블라우스에 검색 스커트를 똑같이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예뻐 보이고 험렁한 회색 가디건을 검색 치마위에 입은 모습이 추레해 보였던 모양이다. 그런 선생님의 취향을 일반화시켜 학생들에게 좀 추위도 예쁘게 입고 다니라고 하니 학생들은 동의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다른 선생님들은 가디건 입는 걸 괜찮다고 하신단다. 학교의 규범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선생님이 따라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들은 규범을 신뢰할 수 없다. 재수 없게 걸리지만 양으면 되는 악법이 되고 만다.

학교규범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런데 학교생활에서 규범은 권력을 가진 선생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인식한다. 스스로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범을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거다. 체벌을 금지한 이후 고3 교실에서는 학습을 방해하는 친구를 체지하지 않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항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함께 해결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조정해 주길 바라는 거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당사자들의 생각과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대로 하자’며 핏대를 올리는 모습이 바로 교실의 법(교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라 생각된다.

## 2. 교장 한 사람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교과부의 교육법시행령개정에는 학칙인가권을 교장에게 주고 있는데 학칙에 대한 교장의 인식차이가 커서 학교마다 학칙의 차이도 클 것이다. 학생들이 참여해서 학칙을 만들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장 한사람에 의해 학칙의 기준이 정해지고 그 내용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묻지도 듣지도 못한 채 학교생활을 해야만 한다.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초등학생일 때는 두발, 복장, 액세서리 등의 규제가 거의 없다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 신분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은 역 사숙에서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우를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성이 집안에서 살림을 못한다거나 부모나 아이와의 관계를 잘못 풀어간다고 때리거나 벌을 주는 것, 일을 하는데 머리모양이나 전화기 사용이 방해가 되므로 규제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규제를 감내해야 한다. 그동안 몸에 배인 자율의 흔적으로 반항을 하다가 3년쯤 지나면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타율에 익숙해지는 게 아닐까 싶다. 내가 참여해서 공동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고 책임지는 문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잣대로 만들어 억지로 지키거나 피해가는 법을 몸에 익혀 왔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고 당황하고 놀라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만들고 일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을 존중할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 3.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거는 기대

학부모로서 학생인권조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학교의 문화가 사회의 문화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초중고 12년의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생활의 바탕을 마련한다. 또 학교생활을 하는 중에도 학생들은 학교 밖 생활을 동시에 하고 있다. 딸아이는 중학생이 된 이후에 질문이 많아졌다. 자신과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아이와 함께 얘기를 나누려니 학교의 문화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실생활에 빗대면 앞의 예처럼 모순이 생긴다. 나는 학교생활을 통해 아이가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기준을 따르는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규범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이길 바란다. 그러려면 학교에서부터 존중받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하는데 그런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없는 권리는 아니다. 학생인권이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노예해방이나 여성인권운동을 시기 상조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간으로서 기본 권리를 지켜주고 자기의 권리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인권 교육이다. 흔히 학생인권이 교사인권을 침

해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인권은 서로 맞서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권위의 남용에 맞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맞서는 것이 아니다. 인권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

법의 처벌에 기대는 사회보다 양심에 기대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 때 민주시민으로서 더 성숙해 지고 개인도 행복해질 거다. 그 첫 걸음으로 아이와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1. 제안이유

학생의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훈계·훈육의 지도방법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학생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고자 함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운영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
- 나.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동안 상담·선도의 교육적 조치 의무화를 명시함(안 제31조 제1, 3, 5, 6항)
- 다.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훈계·훈육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 제7항)
- 라. 학생의 학습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며,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 권리의 행사 범위를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5 신설)
- 마. 학교현장에서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8조 제3항)

### 3. 주요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1. 1  
 3) 규제심사 : 2011. 2

대통령령 제 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7호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를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 제1항의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1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
5. 1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호,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내의 봉사
3. 사회봉사
4. 특별교육이수
6. 퇴학처분

제31조 제3항 및 5항, 6항, 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의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생략)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①(현행과 같음)
7. <u>학생포상 및 학생징계</u>	7. <u>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이외의 기타 지도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련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u>
<신설>	④ 제1항 제7호의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u>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의</u>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1. <u>학칙에서 정하는 훈계·훈육 방식</u>
2. 사회봉사	2. 학교내의 봉사
3. 특별교육이수	3. 사회봉사
4. 퇴학처분	4. 특별교육이수
	5. <u>10일 이내의 출석정지</u>
	6. 퇴학처분
③ <u>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③ <u>교육감은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상담·선도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개별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출석정지 기간은 연간 30</u>

<p>⑤ <u>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u></p> <p>⑥ <u>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u></p> <p>⑦ <u>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u>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u></p>	<p><u>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⑤ <u>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당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생지도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⑥ <u>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u></p> <p>⑦ <u>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u></p> <p>제31조의5(학생의 권리보장 지원)</p> <p>① <u>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법 제18조4에서 정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② <u>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의 범위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③<u>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u></p>
--	---

<메 모>